



내 집앞·내 점포앞 눈은 내가 치워야 합니다.

2006년부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·제빙에 관한 조례가 시행 되었습니다

성숙한 시민정신을 발휘하여 내가족, 내이웃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합시다!!!

눈을 치워야 하는 범위·시기

- **보도**
 - 당해 건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
- **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**
 - 건축물이 대지에 접한 도로의 중앙선 또는 중앙부분까지
- **눈이 그친 때로부터 3시간이내, 야간에 눈이 내린 경우는 다음날 오전 11시까지**



인천광역시 서구 안전관리과

TEL. 032-560-4703